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-3 신정빌딩 5층 전화 02) 522-7284, 팩스 02)522-7285 웹페이지 http://minbyun.or.kr 전자우편 admin@minbyun.or.kr

문서번호: 15-01-정당해산 대책팀-01

수 신: 언론사

발 신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당해산 대책팀 (02-522-7284)

___ [보도자료]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,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

세 목: [ㅗㅗ '

전송일자: 2015년 1월 23일(금) 전송매수: 표지포함 총 3매

[보도자료]

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,

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

"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, 부당성은 명백하다"

- 1. 지난 1월 14일,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(지부장: 아라가키 츠토무 변호사)에서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첨부와 같이 연대 항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 다.
- 2. 자유법조단 오키나와지부는 위 성명에서 '추상적인 위험성을 근거로 소수 정당의 해산을 명령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 헌법 취지와 인권보장의 국제기준에도 위배되었으며, 한국의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적 업적을 훼손하고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, 부당성은 명백하다'라고 지적하였습니다.
- 3. 또한 '이웃나라에서 활동하는 동아시아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변호사 집단으로서

**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.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, 복제, 배부할 수 없습니다.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. - 1 -

이번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엄중이 항의 하는 바'라고 밝혔습니다.

4.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.

별첨1. 성명서 원본 별첨2. 성명서 한글 번역본

2015. 1. 23.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

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팀

^{**}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.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, 복제, 배부할 수 없습니다.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. - 2 -